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문 이관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2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8.
3. 회부연월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의12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u><신설></u>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u>제60조의12(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u>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독서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u>배치에 관한 사항</u> <u>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u> <u>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 <u>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u> <u>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u>
--	---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법률임.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는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부장관의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 의무와 함께 독서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독서 자료 확보와 독서 지도 담당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학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인 제10조의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교육부의 소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독서문화진흥법」의 조문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옮겨 규정하려는 취지임.

현행 규정과 같이 타 부처 소관 법률에 교육부 소관 사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책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의 추진력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는 교육부 소관 법률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 따라 교육부의 사무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법률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 사업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심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교육부 소관 법률 중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이미 학교도서관의 진흥,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¹⁾,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히,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과 함께 수립·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상호 중복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독서문화진흥법」에서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문화진흥법」에 교육부가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독서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6